

# 2021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 사업 안내

경기도는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우수한 여성기업을 선정·시상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정기업에 판로개척·사업화·홍보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「2021년 우수여성기업 선정」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## 1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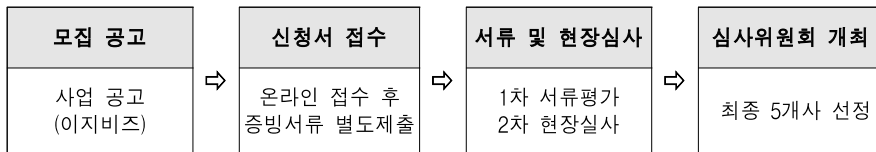
### ○ 선정대상 :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(업력 3년 이상)

- 경기도 소재(공장 또는 본사 소재) 중소기업
-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
  - ※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관 :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
  - ※ 신청 및 발급처 : 공공구매종합정보(<https://www.smpp.go.kr>)

### ○ 선정기준

- 기업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업
- 기술, 마케팅 등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
- 고용 및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루 갖춘 기업
  - ※ 세부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은 [별첨1]의 자가진단표 참조

### ○ 평가절차



### ○ 인센티브 내용

- 상장 및 상패 수여 (훈격 : 경기도지사)
- 선정기업 홍보지원
- 선정기업 지원(기업당 최대 1,000만원/부가세 제외한 총소요비용의 80% 지원)

구분	단위사업명	지원내용	지원 한도
판로 개척	홍보기반구축	홈페이지 / 카탈로그 / 홍보동영상 / 제품사진 촬영	최대 1,000 만원
	전시박람회	국내전시회박람회 참가/ 해외전시회 개별참가	
사업화	디자인 상품화	제품디자인 / 포장디자인 / 시각디자인	
	제품생산지원	제품설계 / 워킹목업 / 금형	
일터 개선	업무및공정효율화	업무 시스템, 자동화 설비 등 인프라 구축	
	근무환경 개선	직원 복리후생 시설 구축	
홍보	선정기업 전원을 대상으로 언론, 미디어 매체 홍보 지원(기업부담금 없음)		

### ○ 신청 제외 대상기업

-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
-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기업
-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기업
-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, 환경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
-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
- 우수여성기업에 기 선정되어 수상이력이 있는 기업

## 2. 신청기간 : 5월 중 공고 예정

## 3. 신청방법 : 이지비즈 온라인접수

- 이지비즈 공고전용 링크 : [www.egbiz.or.kr](http://www.egbiz.or.kr)
- 제출처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7(이의동 906-5) 1층 SOS지원팀
- 문의처

구 분	소 속	담당자	연락처
신청접수 문의	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	백서현 대리	031-259-6115 shvack@gsa.or.kr